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3 - 119호

# [인천스타트업파크] 청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공고

인천스타트업파크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의 **투자유치 촉진** 및 **지원사업 선정**을 위해 역량을 갖춘 운영 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> 2023년 3월 20일 인천테크노파크원장

# 1 모집개요

- □ 사업목적
  - o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유망한 청년 스타트업을 선별 및 밸류업 지원
  - o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·지원하여 투자 유치 및 지원사업(국가, 지자체, 민간) 도전을 지원
- □ 모집규모: 3개사 선정 ※컨소시엄 가능
- □ 협약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3. 12. 7.
- □ 지원내용 : 스타트업 육성 비용 총 100,000천원
  - o 스타트업 5개사 육성 비용(육성 기업 당 20,000천원)
    - 총사업비(운영사별): 111,110,000원
      - → <mark>지원금(90%) 100,000,000원</mark> + 민간자부담(10%, 현금) 11,110,000원(만단위 절삭)
  - o 청년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특화프로그램 운영
  - 성장단계별 특화프로그램 지원(투자유치 및 지원사업선정 등)
  - o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제공

## 2 신청 자격 및 요건

#### □ 운영사 요건

- o 청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기관 또는 기업 등
- o 스타트업의 발굴, 보육 프로그램 구성·운영, 투자 역량, 스타트업의 성장 을 위한 네트워크 등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기관 또는 기업
  - ※ 컨소시엄 참여 시, 기관별 참여 비율을 정확히 명시
  - ※ 자본금 5천만 원 이상(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장 제 13조, 창업기획자 등록요건)
- o 기술사업화 전문회사\* 등 민간기업\*\* 및 협회·단체
  - ※ 민간기업(단체)의 경우,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 필요
  - \* 기술지주회사「산학협력법」, 신기술창업전문회사「벤처기업법」, 중소기업창업 투자회 사 및 창업기획자「액셀러레이터」 등
  - \*\*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4조 제 1항의 업무를영위하는 신용정 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(또는 기업어 음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(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 급,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) 기준
- □ 신청제한 : 신청기관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업신청을 제한
  - o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(기업)(징수유예 포함)
- o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o 한국신용정보원의 "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"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대지 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자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(기업)
- o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
- □ 인력 및 조직 :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
  - o 총괄책임자는 스타트업 육성 분야 3년 이상 경력자
    - ※ 국내·외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
    - ※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, 투자, 멘토링 등 경력 보유자
  - o 창업지원 관련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2인 이상 구성
    - 총괄책임자와 전담인력(매니저, 최소 1명)은 사업 참여율이 100%이어야 함
  - 멘토인력 포함의 경우, 현장 실무경험을 보유한 국내외 성공 창업인, 투자자, 기 술, 경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운영
- □ 대응자금(현금) 투입
- 총 11,110천원(총 사업비 10% 이상)을 대응자금 (현금)으로 투입하여 액셀러레이팅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업기업 지원

3

## 운영사의 주요 의무 및 역할

#### < 청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체계 >

#### 성장단계별 특화프로그램 지원(제안사항)

 
 운영사 선정 협약체결
 청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

 상시점검
 → 중간평가
 → 최종평가

- (투자) 스타트업 대상 투자연계 및 투자유치 방안 제시, 성과 창출
- (지원사업)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및 성과 창출 ※ 운영사의 강점 및 특화역량 창업기업 문제해결에 필요한 특화프로그램 기획·운영

#### □ 스타트업 모집 및 평가, 선정

- o 운영사별 유망 청년 스타트업 발굴 및 선정(3개사)
  - 청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사업 소개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홍보
  - 4차산업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, 바이오융합 분야의 스타트업(스마트시티, 바이오·헬스케어, 빅데이터, 비대면 등) 발굴
  - ※ 평가 기준의 경우, 전담기관과 운영사가 협의 후 확정
  - ※ '22년 청년 창업마당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6개사 중 2개사 내외 포함

## □ 청년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

- o 성장단계별 특화프로그램 운영(제안사항)
  - 4개 유형(①시장진입, ②투자유치, ③액셀러레이팅, ④지원사업연계)

구분	프로그램(안) 예시
(공통)	
운영사 전체	· 연합 워크숍 및 네트워킹(1회이상) · 연합 데모데이(1회이상)
(특화)	
①시장진입	·판로개척 ·네트워킹 ·민간연계 ·글로벌연계
②투자유치	·투자교육 ·IR 역량강화교육 ·국내외 투자 프로그램 활용 지원 ·투자단계 및 산업군별 IR 운영 ·투자 애로사항 상담회 운영 ·법인설립 컨설팅·IPO 주관사 네트워킹 및 출구전략 컨설팅 등
③액셀러레이팅	·문제진단 및 해결 멘토링 등
④지원사업연계	·지원사업 연계방안 진단,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

- ※ 운영사의 강점·전문성, 선정기업의 특성·수요 등을 고려하여 '기업성과 극대화' 를 위한 고도화된 운영 방법과 지원내용을 자율적으로 운영
- ※ 직접적으로 창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의 프로그램 운영 불가

#### □ 사업목표 및 성과창출

- **(투자)** 운영사 별 직접투자 총 0.5억 이상(5개사 기준)
  - •국내외 투자자를 초청한 데모데이, 자체 데모데이 개최 (2회내외)
- (지원사업연계) 지원사업 5건 이상(1천만원 이상, 5개사 기준)

## □ 동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등

- o 스타트업 전담 및 관리
  - 프로그램 운영 시, 스타트업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니즈 수렴 및 반영 등
  - 참여 스타트업 중 관외 기업 선정 시, <u>해당 기업은 사업종료일 전까지</u> 본점·지점·연구소 중 이전 필수
  - 스타트업 매출 증대, 고용 창출, 투자유치 등에 대한 증빙자료 취합 및 제출

#### o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

- 집행내역을 별도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,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
- 사업비 사용 지침에 따른 예산 집행, 회계감사(연 2회) 실시
  - ※ 중간보고('23. 8.~9.), 최종보고('23. 11.~12.) 예정
-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
- o 사업진행 관리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련된 사항
  -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진행상황 관리
    - 3월, 4월, 5월, 6월 매주 둘째주 수요일 대면보고 \*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
  -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업추진 관련된 일련의 사항 등
  - 스타트업 참여율 관리 및 만족도 관리방안 제시 및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

## 4 평가 및 선정

## □ 평가 및 선정

- o 평가절차
  - 제안서 및 첨부서류 검토를 통한 적격 여부, 제안요건 충족 여부를 **사업 담당자가 사전 검토**
  - 제출서류 검토 후 발표평가를 통한 종합점수로 평가
    - ※ 선정기업 2배수 이상 접수 시 서류평가 추진
  - ※ 최종 선정 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(발생)될 경우 선정 취소
  - o 선정기준(공통)
    - 평가위원의 최고,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와 정량점수를 합한 **종** 합점수의 고득점 우선순위로 선정 ※ 사업협약 포기 시, 차순위자 선정
  - o 평가개요
    - 서류평가 : 선정기업 2배수 이상 접수 시 추진
    - 발표평가 : 총 30분, PT 발표(15분 발표, 15분 질의응답)
    - 평가항목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정량평가(20점), 정성평가(80점)로 구성
    -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부문에서 높은 점수 를 얻은 자를 우선으로 함
  - o 정량평가 기준(서류/발표평가 공통)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	5억 이상 ~	10점
공고일 기준까지의 투자(직접투자) 실적	3억 이상 ~ 5억 미만	8점
*기준: '21. 1. ~ '22. 12.	1억 이상 ~ 3억 미만	6점
	1억 미만	4점
	7건 이상	10점
유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실적	5건 이상 ~ 7건 미만	8점
*기준: '20. 1. ~ '22. 12.	3건 이상 ~ 5건 미만	6점
	2건 이하	4점

## o 정성평가 기준(서류/발표평가 공통)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신청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 역량	o 조직, 참여 인력 구성 등 조직 인프라/보육의 전문성 o 투자재원 및 해외 진출, 스타트업 보육, 사업화, 지원사업 선정 등 지원 경험 o 컨설팅, 멘토링 등 전문위원 섭외 계획 o 협력 기관, 참여기관 등과의 협업 경험 및 네트워킹 현황 o 사업 참여, KPI 달성 등에 대한 의지	20
프로그램 이해도 및 운영 계획의 적합성	o 성장단계별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안의 적정성 o 사업추진 방향의 이해도 및 사업 취지와의 적합성 o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o 유망 청년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 계획 o 스타트업 모집 및 주요 성과 홍보	20
특화프로그램의 전문성	o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목표 설정의 적정성 o 성장단계별 지원에 특화된 프로그램 기획 - KPI(사업목표) 및 사업목적에 맞춰 제안 o 투자(직접/연계)유치를 위한 지원방안 o 사업 기간 내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 적정성	30
프로그램 관리 및 성과 창출 가능성	○ 사업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 ○ 담당기업 중 투자유치 및 지원사업선정 우수 사례 발굴계획 ○ 담당기업 성과(매출, 고용창출, 투자유치 등) 관리 계획 ○ 사업 추진 계획 및 달성에 대한 관리의 적절성 ○ 후속 투자 지원의 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○ 후속연계지원 계획의 적절성 및 가능성	10
가점	○ '22년 청년 TIPS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우수 운영사 대상 서류 가산점 부여(2점)	2
	합 계	82

<sup>※</sup> 동점자 발생시 다음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: 1. 특화프로그램의 전문성, 2. 신청기관 현황 및 사업추진 역량, 3. 프로그램 이해도 및 운영 계획의 적합성 순으로 결정

# 5 유의사항

## □ 제안서 작성 기준

- 사업계획서 목차 확인 후, 해당 번호에 아래 내용을 중심적으로 기술

구	분	주 요 내 용
<u>'</u>	1-1	, "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
	기관 일반현황	o 기업정보, 조직도 및 참여 인력 현황, 경쟁력(특화분야 포함), 멘토 확보 및 운영 계획, 기존 스타트업 지원 성과, 해외 협력 기관 현황 등
1. 기관 개요	1-4 전담 및 참가 인력 구성 및 활용	o 참가 인력 구성 및 역량(역량에 따른 인력의 활용이 드러날 것) o 인력 역량에 따른 효과적인 인력 o 특화 프로그램에 전문가풀을 포함해야 하며 전문성과 다양성 제시
2. 추진 전략	2-1. 비전 및 의지 2-2. 특화역량 및 전문성	o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전략 및 과제 관리 방안 제시 - 기업선발·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의 전 과정 운영 방향 및 기획안 제시 o 본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차별화된 특화분야 운영 방안 제시 - 전문 분야(4차 산업 기술 및 인천 특화 분야)를 명확히 기재 o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, 일정, 사업관리계획
	3-1. 홍보	o 스타트업 모집 공고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전체적인 홍보 콘셉트(선정, 중간, 투자, 최종 등) o 홍보 일반계획 및 활용 가능 네트워크 제시 o 온·오프라인 광고 수시 ※ 지원 프로그램 단계별 홍보 방안 제시
	3-1. 스타트업 선발 심사 및 선발	o 스타트업 심사 및 선발 - 유망한 청년 스타트업의 발굴을 위한 적정 심사기준 마련 - 내·외부전문가 풀을 활용한 심사위원 구성안 제시 o 이의제기 대처 방안
3. 중점 추진 전략	3-2.~3-5. 성장단계별 <del>투한프로</del> 램 지원 내용	o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(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역할 및 협업을 통한 전략투자유치, 지원사업 선정 방안, 도출 자료 등) o 스타트업의 밸류업을 위한 구체적 지원내용 제시 - (공통) 공통 교육, 연합 워크숍, 연합 네트워킹, 연합 데모데이 포함 - (특화) 운영사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기획안 및 지원 방안 포함 -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를 위한 방향 설계(초기와 후속 투자를 따로 작성) - 엔젤투자자・벤처캐피탈 등 투자자/업계전문가/기업 등 제안사가 보유한 다양한 네트워크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접점 마련 -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방향 설계 - 지원사업선정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기획안 및 지원 방안 포함 - 지원사업(국가, 지자체, 민간) 연계 지원 방안 o 개별 프로그램, 행사 및 사후 지원 상세 명시(월별) - 기업진단, 멘토링, 컨설팅, 네트워킹, 모의IR, 데모데이 등 o 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내용 포함 o 후속연계지원 - 프로그램 종료 후, 참여 스타트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지원 방안 o 우수 청년 스타트업 사례 발굴 계획
	36 성과관리	o 성과관리 및 확산 계획 - 본 프로그램 KPI 달성, 참여 스타트업의 성과(투자유치, 사업계약 및 제휴, 매출액 증가, IP 확보, 신규고용, 데모데이 등, 기타 자체 성과지표) 관리 ※ 성공사례 발굴 및 관리 - 실현 가능하며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달성 방안 제시
4. 사업비 집행계획	4-1.~4.2. 총괄표 및 세부내역	o 세부 비목(인건비, 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용역비 등)별 집행계획

## □ 운영사 선정 후 전체 일정

스타트업 모집 및 지원 단계	단계별 내용	주체
① 운영사 별 프로그램 제출	프로그램 요약본 등 제출	운영사→인천TP
$\downarrow$		
② 스타트업 모집	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로 <b>운영사 별 공고</b>	인천TP
$\downarrow$		
③ 서면 + 발표평가	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 ※ 전담기관에서 평가위원을 추천 할 수 있음	인천TP
$\downarrow$		
④ 스타트업 선정	- 운영사 별 스타트업 <b>5개사 선정</b> ※ '22년 청년창업마당에서 우수기업 6개사 내외 포함	운영사-스타트업
$\downarrow$		
⑤ 협약체결	<b>3자 협약</b> (인천TP+운영사+스타트업)	인천TP, 운영사, 스타트업
<b></b>		
⑥ 프로그램 지원	<b>운영사 별 프로그램 추진</b> 인천스타트업파크 붐업페스티벌, 워크숍 등 참여	운영사-스타트업
$\downarrow$		
⑦ 중간평가	운영사 별 프로그램 운영, KPI 부분 달성 평가 - 사업운영, 운영비 사용 중간 확인 - 지원 스타트업 현장 방문	운영사-스타트업
<b></b>		
⑧ 만족도 조사	운영사 및 스타트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	운영사, 스타트업
$\downarrow$		
⑨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	운영사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- 사업비 사용 결과 제출 - 기업 만족도 조사 시행, 성과취합	운영사

## □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

#### o 중간점검

- 운영사 사업비 집행 적정성 및 제안 프로그램 추진여부 등을 고려하여 "계속" "보완", 중단"으로 구분
- "계속"으로 결정된 경우, 잔여사업비를 지급하나 "중단"으로 결정된 경우 제재조치
- "중단" 사유 발생 시,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함. 다만,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운영사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, 【환수금 산정기준표】 에 준한 추진율에 따른 환수액을 결정

판정(등급)	세부 기준	제재사항
계속	- 사업비 집행 적정성, 제안 프로그램 추진 여부 등 사업진행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	-
보완	- 사업추진 진척도 미흡, 사업추진계획 미이행, 사업비 집행 오류 등으로 보완행위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	- 시정요구 및 주의
중단	- 사업추진계획 불이행, 사업비 유용 등 사업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	<ul> <li>사업비 환수</li> <li><b>※ 별첨1 환수금</b></li> <li><b>산정기준표 참조</b></li> </ul>

#### o 최종점검

- 운영사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라 제안 프로그램 완료 여부, 사업비 집행실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"적정" 및 "부적정"으로 구분
  - ※ 최종점검 대상은 중간점검 시, "계속"으로 판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진행

판정(등급)	세부 기준	제재사항
적정	- 제안 프로그램 완료 여부, 직접투자 0.5억, 지원사업 선정 5건 등 프로그램 목표 달성 및 사업비 집행실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-
부적정	- 제안 프로그램 추진 실패, 사업비 유용 등 사업집행 실적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련의 경우	<ul><li>사업비 환수</li><li><b> 별첨1 환수금</b></li><li><b> 산정기준표 참조</b></li></ul>

- "부적정" 판정 시,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운영사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, 【환수금 산정기준표】에 준한 추진율에 따른 환수액을 결정

## □ 성과목표 및 지표

구분	성과목표	성과지표	7준 <del>목표</del> 치	점수
			5억이상	30점
	ETL	투자 직접투자 및 투자유치(누적)	3억이상 ~ 5억미만	25점
	구사		0.5억초과~ 3억미만	20점
			0.5억이상	15점
			10건이상	25점
저라	지원사업	지원사업 선정	7건이상	20점
정량	시원사업	(1천만원 이상의 국가사업, 지자체, 민간사업 등)	5건이상	15점
			5건미만	10점
			100%	15점
	<b>゠</b> もし	특화프로그램 달성률	80%이상 ~ 100%미만	11.25점
	국외二포그림	극지그도그럼 현정철	70%이상 ~ 80%미만	7.5점
			70%미만	3.75점
		소계	70	
	프로그램 우수	성(지원 프로그램 우수성,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)		
   정성	스타트업 평기	·(운영사에 대한 스타트업의 만족도)	30	
00	제안서 내 프	로그램 연계 성과 목표 달성	50	
	전년도 대비 스	스타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		
		소계	30	
		합계	100	

- ※ 모든 목표는 사업 기간 내의 건만 인정
- ※ 본사업의 운영사와 스타트업은 성과 및 기업 성장 추이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, 사업 완료 후 2년간 성과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
- ※ 최종 평가 90이상 받은 운영사는 "최우수" (차년도 사업지원 시 가산점 부여)
- ※ 최종 평가 80이상 받은 운영사는 "우수"

## o 운영기관 제재 및 사업비 환수

제재등급	기준	제재 및 환수기준
중단	<ul> <li>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,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</li> <li>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</li> <li>운영기관 선정 필수요건(대응자금 확보 등) 불이행 등으로 사업을 지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</li> <li>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</li> <li>당해 연도에 전담기관으로부터 3회 경고를 받은 경우</li> <li>성과부진 등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협약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</li> </ul>	사업비 환수 (참여 제한 3년)
	<ul><li>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</li><li> 질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</li></ul>	잔액환수
경고	<ul> <li>○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점검·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</li> <li>○사업계획의 중요사항을 불이행한 경우(당초 수행계획의 불이행으로 인해 성과창출을 저해하는 경우 등)</li> <li>○전담기관 승인사항을 득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한 경우</li> <li>○결과보고서, 정산자료 등을 허위 제출한 경우</li> <li>○사업비 관련 규정 미준수 등으로 5백만원 이상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(부적절 집행 총액)</li> <li>○주관기관의 전담인력 및 참여인력이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개인정보, 사업 기밀 사항등을 유출한 경우</li> <li>○대응자금을 고의적으로 미집행 한 경우(총액의 10%이상)</li> <li>○주요사안에 대한 전담기관 보고사항을 위반한 경우</li> <li>○기타 운영기관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</li> </ul>	성과평가시 감점 (건당-3점)
주의	○사업비 관련 규정 미준수 등 5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부적절하게 집행으로(부적절 집행 총액) ○대응자금을 고의적으로 미집행 한 경우(총액의 10%미만) ○성과보고서 등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는 경우	주의 3회시 경 1회 성과평가시 감점 (건당-1점)
시정요구	○사업의 지원·관리 소홀 등 경미한 업무 부주의로 발생한 위반에 대하여 원상복구, 재방방지 노력 등 주의촉구, 개선 의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○1백만원 미만의 금액을 단순착오로 오집행한 경우	조치 기한 내 불응 시 주의 조치

- ※ **참여제한**은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**본 사업에 대해 적용**
- ※ 중단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을 구성하여 사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, 전담기관 이 정한 【별표 1】에 준한 추진율에 따른 환수액을 결정

## 6 신청 및 문의

## □ 신청기간 및 방법

o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3. 4. 3.(월) 15:00

o 발표평가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

o 신청방법 : 온라인접수(https://www.startuppark.kr)

- 서류는 리스트 순서대로 압축파일 1개(zip)로 제출

o 신청문의: 인천테크노파크 스타트업파크센터

(032)228-1219 / e-mail: ysw38@itp.or.kr

o 제출서류: 리스트 상의 모든 서류 각 1부

	구분	작성양식	비고
2023	년 청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(운영사) 신청서	신청양식	· 표지 서명 및 날인 · 표지 서명·날인 후 표지 페이지만 이미지로 삽입하여 hwp 제출
	년 청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(운영사) 사업계획서	신청양식	· 상기 제안서 작성안을 참고하여 작성 · hwp 제출
2023	년 청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(운영사) 발표자료	자유양식	· PPT 제출
붙임1	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	별도	<ul><li>주관/참여 기관 각각제출</li><li>해당 세무서, 인터넷등기소 등</li><li>2023년 1월 이후 발행본</li><li>pdf 제출</li></ul>
붙임2	국세,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1부	별도	<ul><li>주관/참여 기관 각각 제출</li><li>국세청, 지자체,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</li><li>2023년 1월 이후 발행본</li></ul>
붙임3	정관 및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	별도	· 자체 서명 및 날인
붙임4	전문인력 현황 및 자격 증명 서류	별도	· 자격요건 참조 관련 증빙 · pdf 제출
붙임5	기타 증빙 서류	별도	· pdf 제출
별첨1	서약서	양식참조	· 주관기관 날인 및 총괄책임자 서명 · pdf 제출
별첨2	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	양식참조	· 주관/참여 기관 날인 및 참여 인력 전원 서명
별첨3	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	양식참조	· 주관기관 날인 및 총괄책임자 서명 · pdf 제출
별첨4	참여인력 참여확인서	양식참조	·주관/참여 기관 날인 및 총괄책임자 서명 · pdf 제출
별첨5	보안서약서	양식참조	· pdf 제출
별첨6	현금부담 출자 확약서	양식참조	·주관/참여 기관 날인 및 총괄책임자 서명 · pdf 제출

- ※ 필수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 지원 제외 조치
- ※ 증빙서류는 2023년 1월 이후 발급분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해야 함
- ※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, 원본 서류(pdf 파일 제출본) 등 추가 제출

### □ 기타사항

- o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o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-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
-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
- o 선정이후 협약일 이전까지,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 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o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운영사 선정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
  - ※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
- o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등의 사유 발생, 주관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

## 7 관련규정

## □ 관리 규정신청방법

o 「2023년 사업비 산정 기준」이 우선 적용되며,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창업진흥워-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(9차개정)」을 준용

## 【별표 1】

# 환수금 산정기준표

	구분	성목표	성과지표	기준 <del>목표</del> 치	인정률
		<u> </u>	0-1 1-	100%	15%
		= -1	직접투자(0.5억)	75% 미만	10%
		투자		50% 미만	5%
				25% 미만	0%
				100%	15%
	정량	지원사업	지원사업 선정 (1천만원 이상의 국가사업, 지자체, 민간사	75% 미만	10%
	(70%)	MEMB	업등, 5건)	50% 미만	5%
중간점검 "중단"				25% 미만	0%
				100%	40%
		특화프로그램	프로그램 달성률(100%)	75% 미만	30%
				50% 미만	20%
				25% 미만	10%
정 (30	정성 (30%)	프로그램 우수성 스타트업 평가( 제안서 내 프로	30%		
			타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		
			<b>타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</b>	100%	
	구분	전년도 대비 스타	타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	100% 기준 <del>독교</del> 치	인정률
		전년도 대비 스타 합	다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 · 계(%)		
		전년도 대비 스타 합 성과목표	하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 계(%) 성과지표	가운 <del>목표</del> 치	인정률
		전년도 대비 스타 합	다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 · 계(%)	<b>기준 목표치</b> 100%	<b>인정률</b> 30%
		전년도 대비 스타 합 성과목표	하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 계(%) 성과지표	<b>가준 목표치</b> 100% 75% 미만	<b>인정률</b> 30% 20%
		전년도 대비 스타 합 성과목표	하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 계(%) 성과지표 직접투자(0.5억)	기준 목다시 100% 75% 미만 50% 미만 25% 미만 100%	인정률 30% 20% 10% 0% 30%
	구분	전년도 대비 스타 합 성과목표	다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 계(%) 성과지표 직접투자(0.5억) 지원사업 선정 (1천만원 이상의 국가사업, 지자체, 민간사	기준 목표치 100% 75% 미만 50% 미만 25% 미만 100% 75% 미만	<b>20 20 20 20 20 30 0 30 0 30 20 20 30 20 30 30 30 30 30 30 30 3</b>
친종적건 "부전젓"		전년도 대비 스타 합 성과목표 투자	하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 계(%) 성과지표 직접투자(0.5억)	기준 목표치 100% 75% 미만 50% 미만 25% 미만 100% 75% 미만 50% 미만	<b>20%</b> 30% 20% 10% 0% 30% 20% 10%
최종점검 "부적정"	구분	전년도 대비 스타 합 성과목표 투자	다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 계(%) 성과지표 직접투자(0.5억) 지원사업 선정 (1천만원 이상의 국가사업, 지자체, 민간사	기준 목표치 100% 75% 미만 50% 미만 25% 미만 100% 75% 미만	<b>20 20 20 20 20 30 0 30 0 30 20 20 30 20 30 30 30 30 30 30 30 3</b>
최종점검 "부적정"	구분	정기목표 투자	다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 계(%) 성과지표 직접투자(0.5억) 지원사업 선정 (1천만원 이상의 국가사업, 지자체, 민간사업 등, 5건)	기준 목 지 100% 75% 미만 50% 미만 25% 미만 100% 75% 미만 50% 미만 25% 미만	<b>인정률</b> 30% 20% 10% 0% 30% 20% 10% 0%
최종점검 "부적정"	구분	정기목표 투자	다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 계(%) 성과지표 직접투자(0.5억) 지원사업 선정 (1천만원 이상의 국가사업, 지자체, 민간사	기준 목표치 100% 75% 미만 50% 미만 25% 미만 100% 75% 미만 50% 미만 25% 미만 100%	인정률       30%       20%       10%       0%       30%       20%       10%       0%       10%       10%
<b>최종점검 "부적정</b> "	구분	정기목표 투자	다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 계(%) 성과지표 직접투자(0.5억) 지원사업 선정 (1천만원 이상의 국가사업, 지자체, 민간사업 등, 5건)	기준 목표치 100% 75% 미만 50% 미만 100% 75% 미만 50% 미만 25% 미만 100% 75% 미만	<b>인정률</b> 30%       20%       10%       0%       30%       20%       10%       0%       10%       7%
최종점검 "부적정"	구분 정량 (70%)	정의목표 투자 지원사업 특화프로그램 프로그램 우수성 스타트업 평가(전 제안서 내 프로	다트업 성과 창출(매출, 고용, 지재권, 수상 등) 계(%) 성과지표 직접투자(0.5억) 지원사업 선정 (1천만원 이상의 국가사업, 지자체, 민간사업 등, 5건)	기준 목과치 100% 75% 미만 50% 미만 25% 미만 100% 75% 미만 25% 미만 100% 75% 미만 100%	<b>인정률</b> 30%       20%       10%       0%       30%       20%       10%       7%       5%       0%

※ 환수금액 = {집행액 ×(1 - 인정률)}